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

1. WTO의 구성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각료회의를 끝으로 해체되고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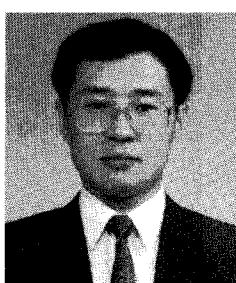
WTO의 탄생을 위해 마라케쉬에서 조인된 UR 최종 협정서의 제 1부는 "최종 의정서"이며, 제 2부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고, 제 3부는 "각료 선언 및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 협정서의 제 2부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은 전문과 16개 조문, 그리고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첫째 부속서는 다시 3개의 하위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UR 협상 결과인 다자간무역협정(MTA : Multilateral Trade Agreement)이 모두 포함되며, WTO 설립협정에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MTA에 가입된다. 또한 부속서는 회원국간에만 적용되는 "복수국간 무역협정

(PTA: Plur-ilateral Trade Agreement)"을 포함하고 있다. PTA는 동경라운드 까지는 GATT 체계와 무관했었으나 UR 최종협정에서 WTO 체제로 들어오게 되었다.

WTO는 의결기관으로서 2년마다 개최되는 각료회의 (Ministerial Conference)가 있고, 각료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일반 이사회(General Council)가 있다. 일반 이사회는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무역정책검토기구(TPRB: Trade Policy Review Body)의 기능도 수행한다. WTO는 과거와 같은 합의제 원칙이 아닌 다수결 투표가 가능함에 따라 의사 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또한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새로이 출발하는 WTO 체제에는 기존의 GATT에 추가적으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추가되었다.

WTO 체계와 이를 구성하는 각 협정의 관계는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정호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지상증계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

부속서 1

부속서 1A :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 (GATT)

: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TBT)

:

:

부속서 1B :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부속서 1C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TRIPs)

부속서 2 :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DSP)

부속서 3 : 무역정책검토제도 (TPRB)

부속서 4 : 복수국간 무역협정 (PTA)

:

:

<그림>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의 구성

WTO를 구성하는 <그림>의 각각의 요소는 마라케쉬 최종협정의 제 2부인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의 네 개의 부속서이다. 이들 부속서 중에 정보기술 표준화 활동과 관련이 되는 부분은 부속서 1의 첫째 부속서인 1A의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에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부속서 4인 PTA(복수국간 무역협정)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이다.

II.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2.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개관

기술규정과 표준 및 적합성판정 절차는 생산자에게는 대량생산에 기반을 마련해주며, 소비자에게는 구매의 안정성과 상품 선택의 폭을 넓게 해주는 등 의 많은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산 상

품의 수입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기술적 특성을 기술 규정이나 표준의 내용으로 반영하거나 또는 상품의 적합성판정 절차를 복잡하고 까다롭게 수행함으로써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 제도가 생산능률의 향상과 국제무역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GATT의 제 7차 다자간협상인 동경라운드(1980년 1월부터 협력 발휘)의 9가지 코드(code) 중의 하나로,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리케쉬에서 조인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리케쉬 협정"을 구성하는 네 개의 부속서 중에 첫째 부속서인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을 구성하는 13개의 협정 중에 하나로 내용이 보다 강화되어 개정되었다. 따라서 TBT는 과거 다자간 무역협상 코드에서 WTO 체제에 정식으로 들어옴에 따라 WTO 회원국은 TBT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

TBT에서 사용되는 표준과 적합성판정에 대한 용어는 ISO/IEC Guide 2 "General terms and their definitions concerning standardization and related activities"나 국가기간전산망 표준인 KIS-5-0036(표준화 및 관련활동에 관한 일반용어와 그 정의)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TBT에서 서비스는 제외되고 있다. TBT 협정서 부록 I에 있는 이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규정 :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과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 또한 기술규정은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

표준 :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칙, 지침 또는 상품의 특성이나 관련 공정과 생산방법

을 규정하는 문서로서, 표준인정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 아닌 문서. 표준은 또한 상품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취급할 수 있다. TBT 협정에서 표준은 자발적인 문서, 기술규정은 강제적인 문서로 정의된다.

적합판정 절차 : 기술규정 또는 표준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를 말한다. 적합판정 절차는 특히 표본추출, 시험 및 검사, 평가, 검증 및 적합보증, 등록, 인증과 승인, 그리고 이들이 결합된 절차 등을 포함한다.

기존에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 절차는 최종제품에 대해 적용되었으나, UR 협상에서 표준화 관련 주요사항에는 공정 및 생산방법(PPM :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ISO 9000 시리즈이다. 이러한 추세는 전산업 부문에서 대단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2 GATT와 국제표준화

국제적으로 통일된 표준을 만드는 일은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수행하고 TBT에서는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나 효과를 갖지 않도록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판정 절차를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있다.

국제표준을 만드는 기관으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

cation Union) 등이 대표적이다. ISO와 IEC는 정보기술 분야의 표준화 활동을 공동으로 가속화하기 위하여 1987년 ISO/IEC JTC1을 결성하여 정보기술 및 통신과 관련된 분야에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JTC1에서 작성한 정보기술과 관련된 표준은 1995년초 약 1000건이다(ISO 전체 표준의 약 10%).

2.3 TBT 최종 협정문의 주요 내용

TBT 협정은 전문과 15개 조의 본 조항, 세 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15개 조의 본 조항은 일반규정(제1조), 기술규정 및 표준(제2~4조),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적합(제5조~9조), 정보 및 자원(제10조~12조), 기구, 협의 및 분쟁해결(제13조~14조), 최종조항(제15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의 주요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제 1조 : 일반규정

- ◇ 적용범위 :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
- ◇ 예외 : 부속서 1에 정의되어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 정부조달 협정에 따른 정부조달 구매명세서

제 2조 :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 참조 : 중앙정부기관은 중앙정부 부처 및 이들의 행정권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
- ◇ 수입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 준수
 - (참조 : '내국민대우'란 수입국내에서 국내상품과 수입상품 사이의 균등한 경쟁조건을 보장함으로써 무역장벽 제거)

- ◇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나 효과를 갖지 않도록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
- ◇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무역 규제가 가능
- ◇ 국제표준이 존재 또는 완성이 임박한 경우, 이를 자국 기술규정의 기초로서 사용
- ◇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
 - 다른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규정의 정당성을 설명
 - 다른 회원국의 이해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 간행물에 공표하며
 - WTO 사무국을 통하여 회원국 통보
- ◇ 상품요건은 성능을 기준으로 기술규정에 명시
- ◇ 본 규정 단계 생략
 - 안정, 건강, 환경보호, 국가안보의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 사후조치가 필요

제 3조 :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 참조 : 지방정부기관은 중앙정부기관을 제외한 정부(예; 시, 도, 군, 읍) 및 이들의 행정권의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
- 참조 : 비정부기관은 기술규정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
- ◇ 중앙정부기관은
 - 지방정부기관 및 비정부기관이 제 2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 지방정부기관의 기술규정은 제 2조 관련 규정 (9.2항 및 10.1항)에 따라 통보 보장

제 4조 : 표준의 준비, 채택

- 참조 :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의무이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모범관행규약이 도입됨. 다음은 모범관행규약의 내용임
- ◇ 모범관행규약에 가입하고 이를 준수하면 TBT 협정의 준수로 간주
 - ◇ 표준기관(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기관 또는 비정부기관)에게 가입 개방
 - ◇ 모범관행 가입과 탈퇴는 ISO/IEC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에 기관의 명칭 및 주소 그리고 현재 및 향후 표준화활동의 범위 등을 통보
 - ◇ 내국민대우 원칙 준수
 - ◇ 표준화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 않음을 보장
 - ◇ 국제표준의 충분한 활용
 - ◇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
 - ◇ 표준의 통일
 - ◇ 매 6월마다 자신의 명칭 및 주소, 현재 준비중 이거나 전 기간에 채택한 표준을 포함하는 작업 계획을 공표. 구체적인 표준안의 명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제공. 작업계획의 존재에 대한 통지는 표준화활동에 관한 국가 또는 경우에 따라 지역의 간행물에 공표(예; 관보).
 - ◇ 이해당사자가 표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한 60일 이상의 기간을 허용. 이해당사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표준안을 신속히 제공
 - ◇ 채택된 표준은 신속히 공표
 - ◇ 요청이 있는 경우 작업계획의 사본 또는 자신이 제정한 표준의 사본을 신속히 제공

제 5조 :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 절차

- ◇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적합하다는 보증이 요구

되는 경우, 중앙정부기관은 다른 회원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 다음 규정의 적용을 보장

- 적합판정 절차는 내국민대우 원칙이 준수되도록 준비, 채택 및 적용
- 적합판정 절차는 국제무역에 장애나 그러한 효과가 없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
- ◇ 적합판정 절차의 근거로서 국제표준기관이 발표한 관련지침이나 권고사항 또는 그 관련 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보장

제 6조 :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의 인정

- ◇ 상이한 적합판정 절차가 동등한 결과를 보장하는 경우 적합판정 절차의 결과 수용을 보장
- ◇ 사전협의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국제표준기관에 의하여 발표된 관련지침 또는 권고사항의 준수가 인증을 통하여 입증될 경우 적절한 기술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
 - 적합판정 결과의 수락을 회원국내 지정된 기관의 적합판정 결과로 국한하는 문제
- ◇ 적합판정 절차의 결과를 상호인정하기 위한 협상을 권장하고, 적합판정 기관의 내국민대우 원칙

제 7조 : 지방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 절차

- ◇ 지방정부기관도 제 5조 및 제 6조 규정의 준수를 보장
- ◇ 지방정부의 적합판정 절차가 제 5조 제 6.2항 및 제 7.1항 규정에 따른 통보를 보장
- ◇ 중앙정부를 통한 다른 회원국과 접촉

제 8조 : 비정부기관에 의한 적합판정 절차

- ◇ 비정부기관이 제 5조 및 제 6조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고, 준수하는 경우에만 중앙정부가 이들 기관이 운영하는 적합판정 절차에 의존

제 9조 : 국제 및 지역적 체제

- ◇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적합판정에 대한 국제적인 체제의 수립과 채택
- ◇ 국제 또는 지역적 적합판정 체제가 제 5조 및 제 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 가능한 경우 중앙정부기관이 이러한 체제에 의존하도록 보장

이 유보할 수 없음

제 10조 :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판정 절차에 관한 정보

- ◇ 이해 당사자로부터의 문의에 응답
- ◇ 기술규정, 표준, 적합판정 절차에 대한 하나의 문의처가 존재 (한국; 공업진흥청)

제 11조 : 다른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

- ◇ 기술규정의 준비에 관하여 다른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에게 조언
- ◇ 국가표준기관의 설립 및 국제표준기관에의 참가

제 12조 :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 ◇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를 제공

제 13조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

-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의 운영이나 목적의 증진에 관계되는 제반사항에 관하여 협의

제 14조 : 협의와 분쟁해결

- ◇ 협의와 분쟁해결은 분쟁해결기구의 주관
- ◇ 패널은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기술적인 성격의 문제를 지원할 기술전문가단을 설치

제 15조 : 최종 조항

- ◇ 어느 규정에 대해서도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 없

III. 앞으로의 과제

앞에서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서 TBT 협정의 위치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정보기술 및 통신과 관련된 표준을 개발하거나 제정하는 기관이 정보통신부와 통상산업부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앞으로 두 기관은 정보기술 및 통신의 표준화 및 인증과 관련된 WTO 업무를 어떻게 다룰 것이지 협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기술 및 통신의 표준과 인증, 그리고 적합시험과 관련이 있는 한국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전산원(NCA),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등은 본 협정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무엇을 이행 해야하는지를 결정하고 관련 절차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모범관행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TBT 협정 그 자체 위반에 따른 국가적인 문제는 발생하여도 업무 절차의 개선이나 신설로 해결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표준이나 인증이 WTO의 '정부조달 협정'과 관련되면 매우 어려운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정부조달에서 표준과 인증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해야 할 시기라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1. 법무부, UR 협정의 법적 고찰(상), 1994.
2. 외무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1994. 6.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UR 총점검 : 최종 협정의 분야별 평가, 1993. 12.